

터키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이 서 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특집]

2012년도 제1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 강화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신흥시장국 MIKT(Mexico, Indonesia, Korea, Turkey)에 대한 투자관련 법제정보로 구성합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외국인투자장려에관한법

III. 외국인직접투자법

1. 목적과 범위
2.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원칙
3. 외국인 투자 활동의 범위
4. 외국인 투자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고용
5. 정책결정과 자료수집

IV.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규정

1. 자료제출의 의무
2. 연락사무소
3. 회사의 형태

V. 회사설립법

VI. 투자 인센티브

1.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
2. R&D 지원

VI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터키는 BRICs를 대체하는 신흥시장국(MIKT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로,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금융 위기를 맞았던 터키는 IMF의 구제금융 대출을 회복의 계기로 삼아, 2002년에서 2007년 사이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EU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최근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수출 및 산업 생산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2010년에는 G20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터키의 빠른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한 요소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를 들 수 있다. 터키는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형적 위치, 정치적 안정, 풍부한 노동력 등을 꼽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써왔다. 특히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징과 세속적 이슬람교 문화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문화적 특징이 터키의 큰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터키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으로는 1954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장려에관한 법(이하 EFC법)¹⁾ 및 관련 법들이 있었으나, 이 법은 2003년에 지금의 외국인직접투자법(이하 FDI법)²⁾으로 대체되었다. 이하에서는 EFC법을 비롯하여,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장려하고자 제정된 터키의 FDI법 및 관련 법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II. 외국인투자장려에관한법

1954년에 제정되어 2003년에 폐지된 EFC법은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모두에 적용되는 법이다. EFC법과 그 관련 법들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여러 차례의 개정·보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에 20여 단계 이상의 각종 승인·허가 절차를 요구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FC법은 USD \$50,000 이상의 최소 자본을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나 경영 참여의 조건으로 두었으며, 대외 송금에 대하여서도

1) Law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of Foreign Capital No.6224 (1954) as amended by Law No.4046 (1995) and Law No. 4105 (1995).

2)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No.4875 (2003).

허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다. 나아가 라이선스, 노하우, 기술 지원, 경영,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계약은 해당 정부기관(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 이하 GDFI)에 등록을 해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되었다.

터키 내의 투자 법제가 이렇듯 많은 제약을 안고 있었던 한편, 터키는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대외적인 장치들을 활용하여 왔다. OECD나 WTO, IMF, World Bank 등의 가입, 30개 이상 국가들과 투자보호장려협약(Protection and Promotion of Investment Agreement) 체결, 40여개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약(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체결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 터키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은 FDI법과 동법의 시행 규정, 그리고 외국인고용법이 2003년에 제정되고 동년에 회사 설립에 관한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이다.

Ⅲ. 외국인직접투자법

EFC법의 폐지와 그를 대체하는 FDI법의 제정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려라는 취지 외에도 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국가 개혁 프로그램과 탈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라는 배경이 있었다. FDI법은 종래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되었던 권리를 하나의 문서로 취합, 정리함으로써 안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장하고, 사전 통제(ex-ante control) 방식에서 최소한의 사후 모니터링(ex-post monitoring)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나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한 승인·허가 절차 및 주식 변경이나 최소 자본에 관한 필요 조건을 폐지하여 절차와 조건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1. 목적과 범위

FDI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원칙들의 규정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승인·허가 체계에서 신고 방식으로 전환, 정책적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FDI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자와 외국에 영주하는 터키 국적자,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 법인과 국제 기관이 포함된다. 종래의 EFC법이 해외거주 터키 국적자를 외국인 투자자의 의미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반해, FDI법은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

장시켰다.

FDI법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나 외국 회사의 지사 설립, 터키에 설립된 회사 지분의 매입 등으로 정해져 있다. 단, 이러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에서 얻은 터키 중앙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화 현금, 국채를 제외한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기계나 장비, 공업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자본,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터키에서 재투자나 자원 개발권을 통해 얻은 자본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은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 100% 외국 자본에 의한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미디어, 항공, 텔레커뮤니케이션, 해운, 항만, 수산물 등과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는 25% 에서 49% 사이의 지분 제한이 있다. 또한 금융, 보험, 광산업계는 이러한 산업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원칙

FDI법은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 직접 투자의 자유를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몰수나 국유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 ‘평등의 원칙(equality principle)’으로 인하여 터키 상법 하에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은 외국 회사가 아닌 터키 회사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편의와 권리, 면제 혜택 등을 동 업종 터키 회사들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래 EFC 법 하에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게 요구되었던 USD \$50,000 이상의 최소 자본 조건이 폐지되었다.

EFC법에 의거하여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기존 회사들에게도 FDI법이 적용되나, 전에 부여 받았던 권리는 계속해서 보장된다.

3. 외국인 투자 활동의 범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 배당금, 투자의 전부 또는 부분의 청산이나 판매 잔액, 보상 지불, 기술도입(license) 이나 경영계약(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인해 얻은 대가, 그리고 은행이나 특수 금융 기관을 통한 국외차입금으로 인한 원리금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종래 EFC법 하에서는 각종 계약이 GDFI에 등록되지 않으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조건은 폐지되었다.

FDI법이 제정된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했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터키 시민권자에게 허용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이나 대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³⁾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폐기되었다.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투자 계약에서 기인한 분쟁은 사법(private law)으로 다스린다. 공공 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외국인과 맺은 계약이나 조건에서 기인하는 투자 분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역 법원을 통한 소송, 국내외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또는 기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관련된 규범들이 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현금 자본(Non-Cash Capital)은 터키 상법에 준하여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 자본 지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주재국의 해당 정부 기관이나 주재국의 사법부가 정하는 전문가 또는 국제평가기관이 정한 가치 평가도 인정한다.

FDI법은 외국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국 회사가 터키 내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연락 사무소가 터키 내에서 상업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재무부 차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외국인 투자 범위 내에서 외국인의 고용

FDI법의 범위 내에서 설립된 회사, 지사, 단체 등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취업 허가는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에서 발행하도록 되어있다. ‘주요 인력(key personnel)’의 의미나 주요 인력의 취업 허가에 대한 절차와 원칙 등의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허가법⁴⁾의 제23조에 따라 2003년 8월에 재무부 차관(Undersecretariat of Treasury)과 노동사회보장부가 함께 마련한 FDI법의 시행규정⁵⁾에서 정해두었으며,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4조(b)항은 FDI법의 시행규정 범위 내의 외국 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외국인고용허가법 제23조는 외국인 투자의 범위 내에서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권한을 정하는 조항으로, EFC법(현재는 FDI법으로 대체 되었음) 하에 설립된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재무부 차관과 노동사회부장부가 공동으로 정한

3) Id. art. 3(d).

4) Law on Work Permits for Foreigners No.4817 (2003).

5) Regulation for Implement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2003).

절차와 근거에 의해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허가 혹은 연장이 거절된다는 조항이다. (a)항은 업계, 노동 시장 및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고용 허가가 부적절할 때, (b)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내국인을 4주 이내에 채용 가능할 때, (c)항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유효한 거주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d)항은 외국인이 고용 허가를 거절당한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직장에서의 고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구한 때, 마지막으로 (e)항은 외국인의 고용이 국가 안보, 공공 질서, 일반적 보안, 공공의 이익, 일반적인 도덕과 위생을 위협하는 때에 각각 허가나 연장을 거절한다고 정하고 있다. FDI법은 이 중 (b)항, 즉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시 해야 할 의무를 제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자국민 또는 비터키인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FDI법은 ‘주요 인력’에 대한 조건은 종래와 같이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3조에 명시된 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외국인고용허가법 제13조는 외국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에 대하여 노동사회보장부가 기준을 정하고 고용 허가를 발행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다른 법에 외국인이 종사해서는 안 되는 직업, 직종을 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예외 조항이 우선시된다.

5. 정책결정과 자료수집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정책의 전체적 틀을 정하는 것은 재무부 차관 소관으로, 차관은 개발 계획과 연간 프로그램의 목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 국제적 투자 트렌드 및 관련 공공 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차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구들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시행규정을 제·개정할 시에는 차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설립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부 차관은 공공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투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시행규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는 통계를 위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IV.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규정

FDI법의 시행규정은 EFC법 하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였던 재무부 차관이 정한 것으로, 재무부 차관국 내 외국인투자 총무부(General Directorate of Foreign Investment, 이하 GDFI)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도록 되어있다.

1. 자료제출의 의무

FDI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들이나 지사들은 GDFI에 다음 세 종류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는 시행령에 Annex I로 첨부된 'FDI운영에 관한 자료 서식(FDI Operations Data Form)'에 맞춘 자본과 운영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매해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두 번째는 시행령에 Annex II로 첨부된 'FDI자본에 관한 자료 서식(FDI Capital Data Form)'에 맞춘 주식계좌(equity accounts)입금 내역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입금이 이루어진 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은 시행령 Annex III으로 첨부된 'FDI 주식 변경에 관한 자료 서식(FDI Share Transfer Data Form)'에 맞춘 자료로, 국내외 주주나 사외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 변경 내역에 대하여 인지한지 1개월 이내에 그러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터키 회사가 외국 투자자의 경영 참여 등을 통하여 FDI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Annex III에 첨부된 'FDI주식 변경에 관한 자료 서식'을 주식 변경 내역에 대하여 인지한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락사무소

FDI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종래 EFC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락 사무소의 설립은 연락 사무소가 터키 내에서 상업 행위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재무부 차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금융·자본 시장이나 보험과 같이 특수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에 있어서의 연락 사무소 설립은 관련 법이 정하는 정부 기관 등의 평가를 요구한다.

연락 사무소 설립의 허가나 허가 연장 신청은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신청한 지 5일 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연락 사무소의 설립 허가 기한은 최장 3년으로, 이후에는 전년의 활동 내역, 향후의 계획과 목표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의 형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 혹은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터키 상법⁶⁾이 정한 ‘회사(companies)’와 터키 계약법⁷⁾이 정한 ‘비법인 조합(unicorporated partnerships)’으로 분류된다.

V. 회사설립법

2003년 제정된 터키상법, 세법, 인지세법,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법⁸⁾(이하 회사설립법)은 이름 그대로 터키의 상법, 세법, 인지세법,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 걸친 회사 설립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는 법으로, 이 법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에 의한 회사 및 지사 설립이 크게 용이해졌다. 터키 정부는 특히 2003년 회사설립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무부 차관과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으나 그러한 허가 절차가 폐지된 점, 그리고 사업등록소(Trade Registry)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1일 내에 회사를 설립과 법인화가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VI. 투자 인센티브⁹⁾

터키 정부는 법의 제·개정 외에도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FDI법의 동등한 대우 원칙 하에 터키 투자자들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6) Turkish Commercial Code.

7) Turkish Code of Obligations.

8) Law on Amendments to be made in Turkish Commercial Code, Procedural Tax Law, Stamp Duty Law,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No. 4884 (2003).

9) Republic of Turkey Prime Ministry 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1. 일반적인 인센티브 제도

일반적 인센티브는 주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주어진다. 인센티브 제도의 이행은 장소, 규모,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된 인센티브 도구로는 인센티브 자격증이 부여된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기계와 장비에 대한 관세의 면제, 그리고 역시 인센티브 자격증이 부여된 프로젝트를 위해 터키 내에서 구매했거나 수입한 기계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면제 등이다.

2. R&D 지원

2008년에 개정된 연구개발활동촉진법¹⁰⁾(이하 R&D법)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사기업의 R&D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EU 국가에 비해 임금이 비교적 낮은 터키에 R&D시설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에 의하면 R&D부서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2024년까지 R&D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터키 내에 생산 시설이 없는 외국 회사들도 R&D시설을 설립하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주된 요소는 R&D지출액 전체를 세금에서 환급, R&D연구직의 소득세의 80% 할인,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R&D연구직 보험료 5년 치의 50% 할인, 특정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공공 기관과 국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특정 보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다.

VII. 맺는 말

터키는 FDI법 이외에도 다양한 대외적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왔다. 72개국과 투자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상호협정(Bilateral Agreemen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을 맺었으며, 75개국과 이중과세 예방조약(Double Taxation Prevention Treaties)을, 21개국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를 맺었다. 이 외에도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며, EU와는 관세 동

10) Law on Enhan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No. 5746 (2008).

맹을 맺어서 꾸준히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왔다.

2011년에는 대 터키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에 비해 83% 증가하여 FDI금액 11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터키는 향후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신흥 시장국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에 한-터키 FTA협정을 개시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며, 최근 이 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과 양국 경제관들의 원탁회의 등이 FTA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터키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60개사 이상의 한국 기업이 이미 터키에 진출해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와 부동산 부문 등에 걸쳐 대 터키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 법을 내놓고 있는 터키의 투자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세히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